

2020 제 5 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중 국 낚시어선업법제

스웨덴 기업활력법제

◆ 외국법제동향

미 국 가상화폐세법

미 국 「공정주택법」

일 본 임대용 주택관리법제

독 일 암호화폐 수탁업법제

중 국 「암호법」

국제기구 해상 사이버 리스크 규범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국
회
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 주요 내용

최정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법학박사(SJD)

I. 들어가며

COVID-19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생활패턴, 소비형식, 근로형태, 사업 환경 등 상당부분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는 새롭지 않은, 더욱 더 탐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도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었으며, COVID-19는 그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디지털 혁명의 가장 중심에는 디지털 경제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전자화폐 또는 가상화폐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새로운 지급수단이며, 또 투자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국가들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 끝에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으로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소득의 산출방법은 양도(매매·교환)·대여의 대가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액수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이다.¹⁾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과세를 시작한 후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하여 이미 과세방향을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소개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0, 93면.

미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과세에 관하여 새롭게 입법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대한 분류를 확정한 후 기존의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은 전환 가능한²⁾ 가상화폐를 연방소득 과세목적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있으며,³⁾ 또 비트코인은 위의 지침과 국세청 질의회신(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FAQs)은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의 예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⁴⁾ 결국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II. 가상화폐 개요

1. 가상화폐 개념과 거래구조

가상화폐의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⁵⁾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따르면, “중앙은행 또는 공적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법정통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2 즉, 정부가 발행한 법정 통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4 https://www.irs.gov/irb/2014-16_IRB#NOT-2014-21-Q&A-1;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2019. 10. 9., Q&A-2,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4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2; 미국 국세청 문답(FAQs) Q&A-37.

5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⁶⁾ 가상화폐 중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인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지털 서명의 연쇄적인 흐름(chain of digital signatures)’로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사람이 고안한 가상화폐 체계이다.⁷⁾

비트코인의 거래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⁸⁾

- ① 비트코인 채굴(mining) 소프트웨어를 개인컴퓨터에 설치하여 비트코인 계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1블록(1블록=25비트코인)이 생성
- ②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 생성된 비트코인을 저장하는데, 이러한 저장소를 전자지갑이라고 함
- ③ 물건을 사고자 하거나 비트코인을 거래하고자 할 때, 판매자는 자신의 비트코인 계좌주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전송하여 거래함
- ④ 비트코인 거래들은 다른 거래들과 모여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단계에서 문제해결과정에서 거래가 진짜임을 확인받음
- ⑤ 거래 확인 후 구매자가 보낸 비트코인은 판매자의 비트코인 계좌에 추가되며 거래가 완료됨. 이때 채굴자는 이와 같은 거래블록(block)을 확인하는 채굴작업을 성공시킨 대가로 한 블록의 비트코인을 지급 받음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블록체인(Block chain)’인데,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거래 이력이 블록으로 묶여 기존에 블록화되어 있는 거래 이력에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채굴’을 통해 거래 이력 조작 여부를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11p. <http://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및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1호, 2015, 90면에서 재인용.

7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1호, 2016, 46면.

8 정승영, 전계 논문, 92면.

2. 미국에서의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분류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은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연방소득세 목적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가상화폐가 전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2014년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정부가 발행한 법정 통화(legal tender)가 아닌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라고 언급하고 있다.⁹⁾ 어떤 가상화폐는 가상적 경제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달러(USD)나 유로(EUR)와 같이 정부가 발행한 통화로 쉽게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가상화폐는 실물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가상화폐 교환소를 통하여 정부가 발행한 통화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유형의 가상화폐가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상화폐이다.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소득세 목적상 자산(property)으로 분류된다고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¹⁰⁾ 물론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실제의 통화(real currency)'와 같이 작용될 수 있고, 재화와 용역을 팔고 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법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¹¹⁾

9 미국 회계감사원, "Virtual Currencies: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2014.05., <http://www.gao.gov/assets/670/663678.pdf>.

10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 4, at A-1.

11 Deidre A. Liedel, "The Taxation of Bitcoin: How The IRS Views Cryptocurrencies", 66 Drake L. Rev. 107, 2018, p.117.

III. 미국 「세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1. 가상화폐 매매(sale) 또는 교환(exchange)

(1) 자본이득·손실(capital gain·loss) 과세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자본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양도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를 매도할 때 가상화폐의 양도가액과 가상화폐의 취득가액(cost basis) 및 거래 수수료, 커미션과 같은 비용을 고려한 조정 기초가액(adjusted basis)과의 차이에 근거하여 양도이득 또는 양도손실을 계산한다.¹²⁾

취득가액(cost basis)에 관하여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양도 또는 교환거래에서 어떻게 취득가액을 확정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 다수의 가상화폐가 한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가격에 가상화폐의 수량이 취득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First-In-First-Out, FIFO)이 사용된다. 즉, 첫 번째 구매한 가상화폐가 첫 번째 매매되거나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매한 가상자산 중 제일 오래된 것의 구매 가액과 매도 또는 교환 당시의 자산의 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산출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양도소득, 단기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달리할 수 있다. 단기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장기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라는 것은 365일 미만의 기간 내에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라는 것은 365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

12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 4, A-7.

13 순 자본이득/손실 신고는 서식 1040(Form 1040) 사용하여 신고한다. 보유기간, 즉 보유하기 시작한 날과 보유 마지막 날에 대한 사항은 서식(Form) 8949를 사용하여 신고한다.

〈표-1〉 2020년 단기양도소득 세율

세율	개인단독신고	부부합산신고	부부별도신고	세대주신고
10%	과세소득 \$0 ~ \$9,875	과세소득 \$0 ~ \$19,750	과세소득 \$0 ~ \$9,875	과세소득 \$0 ~ \$14,100
12%	\$9,876 ~ \$40,125	\$19,751 ~ \$80,250	\$9,876 ~ \$40,125	\$14,101 ~ \$53,700
22%	\$40,126 ~ \$85,525	\$80,251 ~ \$171,050	\$40,126 ~ \$85,525	\$53,701 ~ \$85,500
24%	\$85,526 ~ \$163,300	\$171,051 ~ \$326,600	\$85,526 ~ \$163,300	\$85,501 ~ \$163,300
32%	\$163,301 ~ \$207,350	\$326,601 ~ \$414,700	\$163,301 ~ \$207,350	\$163,301 ~ \$207,350
35%	\$207,351 ~ \$518,400	\$414,701 ~ \$622,050	\$207,351 ~ \$311,025	\$207,351 ~ \$518,400
37%	\$518,401 이상	\$622,051 이상	\$311,026 이상	\$518,401 이상

출처: Kate Ashford, "What Is the Capital Gains Tax Rate?", 2020, Forbes,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capital-gains-tax/>.

〈표-2〉 2020년 장기 양도 소득세율

세금신고유형	0%	15%	20%
개인단독신고	\$40,000까지 과세소득	\$40,001 ~ \$441,450	\$441,450 초과
부부합산신고	\$80,000까지 과세소득	\$80,001 ~ \$496,600	\$496,600 초과
부부별도신고	\$40,000까지 과세소득	\$40,001 ~ \$248,300	\$248,300 초과
세대주신고	\$53,600까지 과세소득	\$53,601 ~ \$469,050	\$469,050 초과

출처: Kate Ashford, "What Is the Capital Gains Tax Rate?", 2020, Forbes,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capital-gains-tax/>.

한편 양도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신고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손실이 한도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차기로 이월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가상화폐 현물교환(like kind exchanges)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투자용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같은 종류나 '동종(like-kind)'인 다른 사업 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교환하는 현물교환(like-kind exchange)은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 §1031에 따라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왔다. 만약 교환의 한 부분으로 다른 동종이 아닌 재산이나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취한 다른 재산 또는 현금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었고, 손실은 인식되지 않았다.¹⁴⁾ 그러나 2017년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1031는 이제 부동산 교환에만 적용이 되고, 동산이나 무형자산의 교환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는 기계, 장비, 자동차, 미술품, 수집품, 특허 및 다른 지적 재산과 무형사업자산은 동종 현물교환으로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⁵⁾ 그래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를 현물로 교환하는 경우도 2018년 1월 1일 전까지 가상화폐간의 교환거래는 과세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었다. 만약 가상화폐와 가상화폐를 교환할 경우에는 교환일의 가상화폐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과 그 자산의 조정 기초가액(adjusted basis)의 차이에 근거하여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한다.¹⁶⁾

2. 순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연간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 투자로부터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의 경우에는 순 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① 순 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 과 ②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정 조정 총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중 적은 것에 대하여 3.8%가 적용된다.¹⁷⁾

〈표-3〉 순 투자 소득세 기준금액

세금신고유형	기준금액
개인신고 또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함께하는) 세대주신고	\$200,000
부부합산신고	\$250,000
부부별도신고	\$125,000
부양자녀와 함께하는 적격 (사별의 경우)생존 배우자	\$250,000

출처: Kate Ashford, "What Is the Capital Gains Tax Rate?", 2020, Forbes,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capital-gains-tax/>.

14 미국 국세청, Like-Kind Exchanges - Real Estate Tax T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ke-kind-exchanges-real-estate-tax-tips>.

15 상계서.

16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Q&A-15, 16".

17 미국 「세법」 §1441(a)(1).

이러한 순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도 가상화폐 양도·교환 거래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순 투자 소득세(NIIT)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양도·교환으로 부터의 발생한 소득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정된 조정 총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중 적은 것에 3.8% 순 투자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3. 가상화폐 채굴 관련 세금

(1) 개요

가상화폐 채굴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상화폐로부터 돈을 버는 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400달러(USD)가 넘는 채굴 보수는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한다. 신고 시에 취미로 채굴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업적 채굴자인지 확정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① 채굴 수입으로 400달러(USD) 이상 벌지 않는 자, ② 자영업으로 채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비사업적 채굴자로 분류한다. 비사업적 채굴자는 채굴 소득을 경상소득처럼 취급하고, 비사업적 채굴자의 채굴과 연관된 손실은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¹⁸⁾

(2)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자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에 총 소득에 포함되게 되는 데, 그것을 수취한 날의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이 총소득에 포함된다.¹⁹⁾

비사업적 채굴 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 서식1040(Form 1040)에 신고한다. 만약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하는 대신에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A(Schedule A)심의조정 총 소득의 최대 2%로 가상(클라우드)채굴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채굴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18 Davey Zelaya, "Cryptocurrency Taxes USA: Your Guide to Crypto Taxes for 2020", 2020, <https://www.exodus.io/blog/cryptocurrency-taxes-usa/#head8>.

19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4,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Q&A-8.

(3)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

만약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USD)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적 채굴자가 되고, 자영업 소득으로서 채굴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적 채굴자는 또한 15.3%의 자영업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 하드웨어, 채굴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사업 비용은 과세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²⁰⁾

채굴소득 신고와 더불어 사업적 채굴자는 채굴사업 비용을 개인기업의 사업 이익 및 손실을 기재하는 별지 C(Schedule C)에 신고해야 하며, 별지 SE(Schedule SE From 1040 또는 1040-SR)에 자영업세를 계산하고 보고해야 한다.

비사업적 채굴수입과 달리 사업적 채굴수입에서 발생하는 순 손실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로 사용될 수 있다.

4. 가상화폐 대여(lending) 관련 과세

가상화폐 또한 다른 금융상품처럼 거래되고, 대여가 가능하며,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등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탈중앙화 금융(DeFi)이란 전통적 금융기관에서 처럼 중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체(delay)나 추가적 비용 없이 사람들을 가상화폐의 거래(trading), 대여(lending), 차용(borrowing)과 같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급속히 성장하는 가상화폐 분야이다.²¹⁾ 이더리움(Ethereum)은 현재 가장 유명한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제공자이며, 다른 많은 플랫폼도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20 Davey Zelaya, "Cryptocurrency Taxes USA: Your Guide to Crypto Taxes for 2020", 2020, <https://www.exodus.io/blog/cryptocurrency-taxes-usa/#head8>.

21 Zac McClure, "DeFi Crypto Tax Guide: Lending, Liquidity Pools, Yield Farming, and Loans Tax", <https://tokentax.co/guides/defi-crypto-tax/>.

만약 가상화폐를 대여하거나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가상화폐를 출자할 경우, 가상화폐 대여로부터 소득을 얻는다면 그 대여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과세가능한 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²²⁾ 신고할 이자소득액은 대여자가 받은 가상자산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 달러(USD) 시장가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는 별도로 대여자는 또 3.8%의 순투자소득세(NIIT)을 부담해야하는데, 가상자산의 매도·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자산이나 기준금액을 넘는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중 적은 것에 적용된다.

5. 가상화폐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만약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보수로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그 가상화폐를 받은 날의 달러(USD)로 측정된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을 총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²³⁾ 납세자가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기초가액은 수취한 날의 가상화폐의 달러(USD) 시장가액이다.

또 용역의 대가로 수취되는 가상화폐는 피고용인(employee)의 경우에는 과세가능한 근로소득으로,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으로 취급될 수 있다.²⁴⁾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비트코인을 달러(USD)로 환전한 금액을 급여 및 세금명세서 서식인 Form W2에 신고한다. 또 달러(USD)로 지급되는 보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가 가상화폐로 지급되는 보수에 적용된다.

6. 하드포크(hard fork) 관련 과세

‘하드포크(hard fork)’는 잇따라 연결된 체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두 갈래로 쪼개지는 등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사해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포크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체인과 하드포크로 생긴 새로운 체인, 두 갈래의 체인이 발생하게 된다.

22 개인소득세 신고서 서식 1040(Form 1040) 별지 B(Schedule B) B Part 1에 기재한다.

23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4, Q&A-3;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Q&A-8, 11.

24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 §4, Q&A-10 & 11;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Q&A-9, and -10.

2019년 10월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에서 하드포크와 과세상 취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Revenue Ruling 2019-24'를 발표하였다. 하드포크가 발생하여 새롭게 분리된 가상화폐를 받으면, 그것을 받은 날 분리된 가상화폐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경상소득이 된다. 이는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접근하여 그 분리된 가상화폐를 매도, 교환 또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하드포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에어드랍(airdrop) 또는 다른 종류의 이전방식으로 분리된 가상화폐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과세가능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²⁵⁾

만약 분리된 가상화폐를 최종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다면, 매매 또는 교환한 날의 매매가 또는 교환가액이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분리된 가상화폐의 보유기간은 하드포크가 발생한 날에 시작된다.

7. 가상화폐 에어드랍(airdrop) 관련 과세

에어드랍(airdrop)은 수 개의 디지털지갑에 무료 코인이 지급되는 가상화폐 분배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종종 토큰(tokens)을 얻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리트윗하거나 설문조사를 완성하는 등의 노력을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료인 토큰(tokens)이나 코인을 에어드랍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토큰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²⁶⁾ 납세자가 가상화폐의 하드포크의 결과로 발생한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는 하드포크와 마찬가지로 2019년 발행된 'Revenue Ruling 2019-24'에서 설명되고 있다. 'Revenue Ruling 2019-24'는 에어드랍은 수많은 납세자들의 배분원장주소에 코인이나 토큰같은 가상화폐의 유닛을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하고 있다. 하드포크에 반드시 에어드랍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드포크에 뒤이은 에어드랍은 기존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원장주소에 새로운 가상화폐유닛을 배분하게 된다.²⁷⁾

에어드랍으로 수취한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배분원장(distributed ledger)에 기록된 날에 수취하게 된다. 그러나 에어드랍 이전이라도 배분원장에 기록이 됨으로써 가상화폐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에어드랍이 배분원장에 기록되었을 때, 만약 납세자가 그 가상화폐에 대하여 지배 내지는 통제를 할 수 없다

25 Revenue Ruling 2019-24.

26 Jamie Redman, "Cryptocurrency Airdrops and Giveaways: What They Are and What's Next", 2020, <https://news.bitcoin.com/cryptocurrency-airdrops-giveaways/>.

27 Revenue Ruling 2019-24.

면 그 가상화폐는 수취되지 않은 것이 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에어드랍된 주소가 가상화폐 교환소를 통하여 관리되는 지갑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상화폐 교환소가 새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지원하지 않아서 에어드랍된 가상화폐가 가상화폐교환소의 납세자 계정에 즉시 입금되지 않는다면, 그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통제는 없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차후에 그 가상화폐를 양도, 매매, 교환 또는 다른 처분을 할 권한을 얻게 된다면, 그 때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취급된다.²⁸⁾

미국 「세법」 §61(a)(3)은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 소득은 재산상 거래로부터의 이득을 포함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납세자가 신청해서 일시적으로 받은 에어드랍 또는 지갑에 임의적으로 생긴 에어드랍 가상화폐는 수취한 날에 경상소득으로 과세된다. 에어드랍에 대한 경상소득과 조정 취득가액은 수취한 날에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의 시장가액과 같다. 에어드랍으로 생긴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서식1040(Form 1040)에 신고한다.

에어드랍된 가상화폐를 받은 후, 그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면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과세가 된다. 단기 또는 장기 양도소득(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에어드랍을 받은 날에 시작된다.²⁹⁾

8.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 ICOs) 관련 과세

(1) 개요

개념적으로 가상화폐공개(ICO)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 IPO)와 유사하다. 창업자본이 필요한 초기 단계의 사업 벤처(business ventures)들이 대중들에게 기업공개를 하고, 기업공개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게 된다. 가상화폐공개(ICO)는 투자자들에게 지역 규제통화(regulated local currency)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되는 토큰(tokens)을 제공하고, 가상

28 Revenue Ruling 2019-24.

29 주의할 것은 만약 에어드랍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교환할 시장이 없다면, 가치가 낮거나 시장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화폐공개(ICOs)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실제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 가능한 토큰을 받게 된다.³⁰⁾ 가상화폐 공개를 하는 스타트업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그것이 개발되면, 토큰을 받은 자는 그 토큰을 물건을 사거나, 용역과 교환하거나, 새로운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 일부의 토큰은 그것을 보유한 자에게 그 벤처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의하여 강하게 규제되는 증권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공개(ICOs)가 이루어지던 초기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상화폐공개(ICOs)에 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웹사이트는 가상화폐공개(ICOs)에서 취득한 토큰이 그 성격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s)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토큰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과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두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은 거래될 수 있는 외부의 자산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이러한 토큰은 증권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단순히 앱코인(app coins)이나 사용자 토큰(user tokens)으로, 나중에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투자용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딜러가 몇 달 후에 발매될 비디오게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이에 창업회사가 그 회사가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을 생성해줄 수 있는 것이다.

(2) 증권 토큰(security token)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상화폐공개(ICOs) 토큰(token)은 그것들이 대부분 투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이라고 하고 있다. 기업공개(IPOs)에서 발행되는 전통적인 증권처럼 가상화폐공개(ICOs)에서 받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의 조정 기초 금액이 납세자의 취득비용이 된다. 또 수취 당시에는 소득이 인식되지 않는다. 가상화폐공개(ICOs) 운영자는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연도 동안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의 개요를 나타내는 신고서식 1099-B(Form 1099-B)(중개인과 물물교환거래로 부터의

30 Davide Klasing, "Understanding Initial Coin Offerings, Tokens, and Their Tax Treatment", 2018, <https://klasing-associates.com/understanding-initial-coin-offerings-tokens-tax-treatment/>.

이익; 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를 제공해야 한다. 증권 토큰(security token) 취득 후에 그것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된다.

(3)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가상화폐공개(ICO) 토큰 중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과 다르게 분류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보유자에게 토큰과 연관된 블록체인 기술의 그것과 같은 소유권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구입은 무형자산의 구입처럼 분류된다. 수취일에 과세목적상 원래 취득비용인 토큰의 조정 기초가액으로 소득이 인식이 되지는 않고, 토큰 취득 후 매매나 교환이 있을 때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인식된다.

9. 가상화폐를 기부할 경우(crypto donation) 과세

(1) 개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자선단체들에 대한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세법」 제501조(c)(3)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가치가 상승한 가상화폐자산을 비영리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³¹⁾ 그러나 기부로 인한 이러한 조세절감에는 제한과 요건이 있다.

납세자가 1년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자의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30%까지 기부자산의 시장가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산이 매매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이나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을 발생시켰을 경우라면, 공제는 미실현

31 미국 재무부 「규칙」 §1.170A-1(c)(1).

이익분 만큼 감소된다.³²⁾ 그러므로 이 경우 공제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이나 자산, 기부 당시에 단기로 보유한 자본자산, 그리고 일정한 다른 종류의 자산의 조정 취득가액 (adjusted basis)으로 제한된다.

가상화폐를 비영리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의 또 다른 이점은 당해 연도에 100%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은 다음 5년 동안 이연될 수 있다.

(2) 실체적 요건

500달러(USD) 이상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³³⁾ 또 5,000달러(USD)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적격 평가(qualified appraisal)가 이루어져야만 한다.³⁴⁾ 금전기부 또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주로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재고자산이나 자산 또는 공개거래증권 (publicly traded securities)에 대해서는 적격평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³⁵⁾ 여기서 공개거래증권 (publicly traded securities)이란 기준에 확립된 증권시장에서 그 시세를 쉽게 알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 재무부 「규칙」은 공개거래증권은 미국 「세법」 §165(g)(2)의 의미 내의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세법」 §165(g)(2)는 ‘증권(security)’을 ① 회사의 주식, ② 회사의 주식 인수권 또는 청약권, ③ 회사,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이자쿠폰을 보유하거나 등록된 형식의 채권, 회사채, 어음, 증서 또는 다른 채무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유사한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거래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5,000달러(USD)가 넘는 비트코인의 기부는 반드시 적격 평가(qualified appraisal)를 받아야 한다. 또 만약 동일한 기부자가 동일한 과세연도 동안 모두 ‘유사한 종류의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 후, 요청하는 공제액의 총액이 5,00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의 평가규칙이 적용된

32 미국 「세법」 §170(e)(1)(A).

33 미국 「세법」, §170(f)(11)(A)(i).

34 미국 「세법」, §170(f)(11)(C), §170(f)(11)(D).

35 미국 「세법」, §170(f)(11)(A)(ii)(I).

다.³⁶⁾ ‘유사한 종류의 자산’이란 같은 일반적 범주 또는 같은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모든 가상화폐 기부가 이러한 평가목적상 모두 합산되어야 하는지 고려해야만 한다.³⁷⁾

V. 마치며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과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면서 각 국가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그러한 경제환경을 어떻게 규명하며 그러한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그 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미국 역시 가상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2014년 미국 국세청 ‘지침 2014-21(Notice 2014-21)’를 발행하여 금전으로 전환가능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취급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기초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성격은 단지 자산에 한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디지털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채굴, 블록체인인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드포크(hard fork), 무료 코인지급에 해당하는 에어드랍(airdrop), 가상화폐공개(ICOs)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은 2019년에 ‘Revenue Ruling 2019-24’을 발행하여 하드포크(hard fork), 에어드랍(airdrop) 등 새로운 유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가상화폐 분야는 나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또한 여전히 가상화폐의 성격 및 분류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상화폐과세에 대하여 꾸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거래 기록 및 장부보유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과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침을 발행하고 세원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36 미국 재무부 「규칙」, §1.170A-13(c)(1)(i).

37 미국 재무부 「규칙」, §1.170A-13(c)(7)(iii).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0.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 논집 제31집 제1호, 국제조세협회, 2015.
- _____,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1호, 국제조세 협회, 2016.
- Davey Zelaya, “Cryptocurrency Taxes USA: Your Guide to Crypto Taxes for 2020”, 2020, <https://www.exodus.io/blog/cryptocurrency-taxes-usa/#head8>.
- Davide Klasing, “Understanding Initial Coin Offerings, Tokens, and Their Tax Treatment”, 2018, <https://klasing-associates.com/understanding-initial-coin-offerings-tokens-tax-treatment/>.
- Deidre A. Liedel, “The Taxation of Bitcoin: How The IRS Views Cryptocurrencies”, 66 Drake L. Rev. 107, 2018.
-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4. <http://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 미국 회계감사원, “Virtual Currencies: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2014. 05. <http://www.gao.gov/assets/670/663678.pdf>.
- Jamie Redman, “Cryptocurrency Airdrops and Giveaways: What They Are and What's Next”, 2020, <https://news.bitcoin.com/cryptocurrency-airdrops-giveaways/>.
- Kate Ashford, “What Is the Capital Gains Tax Rate?”, 2020, Forbes,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capital-gains-tax/>.
- Zac McClure, “DeFi Crypto Tax Guide: Lending, Liquidity Pools, Yield Farming, and Loans Tax”, <https://tokentax.co/guides/defi-crypto-tax/>.
- 미국 국세청, “질의회신(FAQs)” 2019. 10. 09.,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 미국 국세청, “Like-Kind Exchanges - Real Estate Tax T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ke-kind-exchanges-real-estate-tax-tips>.
- 미국 국세청, ‘자침 2014-21(Notice 2014-21)’, https://www.irs.gov/irb/2014-16_IRB#NOT-2014-21.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